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목차]

- Ⅰ.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과 확산
- Ⅱ. 외국의 주민참여예산 발전과정과 특징
- Ⅲ.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국 네트워크 형성
- Ⅳ.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국 네트워크의 향후 정책방향

지방자치 FOCUS 제75호(2014. 5)

내용문의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원희

wonheeldaum@hanmail.net

배포문의 발간 담당자(02-3488-7300)

본 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이원희(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I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과 확산

1.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를 예산에 반영시키거나 또는 스스로 예산을 결정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 과정의 참여제도를 말함
- 이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의 동의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발전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버넌스의 하나의 형태로써 의의를 지니며, 예산의 편성과 결정을 포함하여 예산운영 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합의를 강조하여 시민들의 예산주권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임
- 궁극적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측면에서 시민들이 재정의 주권자로서 개입하여 기존 지방의회에서의 예산편성 및 심의 결정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방재정의 주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임

2. 주민참여예산제의 지향 가치

-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으로서의 예산감시 시민운동
- 국가와의 대립적 구도 속에서 계급운동으로서 발전해오던 시민운동이 1987년 6.29 선언 이후로는 환경, 여성, 교통 등과 같이 생활의 질을 개선하려는 신시민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음

- 투사형과 전사형의 시민운동에서 생활 개선형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예산감시 시민운동도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예산감시 시민운동은 시민권을 회복하고, 정치를 생활의 과정으로 전환하고(politics as way of life), 정치를 참여형 모습(politics as participatory mode)으로 전환시키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식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음
- 국가와 시민의 관계 재형성
- 다른 시민운동과 달리 예산감시 시민운동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지위를 재규정하는 의미가 강함
 - 소비자(customer model)로서의 시민은 계약에 의한 공공서비스를 중시하는 데, 이는 수동적 지위가 주어짐
 - 소유자(owner model)로서의 시민은 주권을 행사하는 지위이나.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음
 - 가치중심(value-centered)의 시민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통투자하는 가치 형성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하고 있음
- 공식적 통제 기구의 보완 기제
- 정부는 대리인으로서의 도덕적 해이에서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으로 이에 대한 통제가 어려움
- 예산운영 과정에서의 소비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할 때이며, 조직화된 시민의 운동이 필요함
- 정책 투입 기능의 활성화
- 주민의 참여는 정부의 기능을 보완하는 기능보다는 사회 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이 강함
 -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반영시키는 정책 제언의 기능이 강함

- 예산 시민운동을 통해 국가의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 유발이 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3. 주민참여예산제의 확산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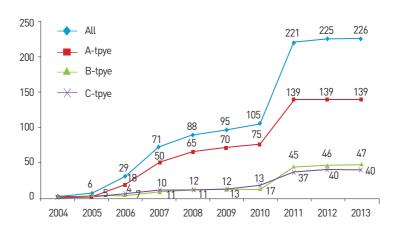
- 1999년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주창하였고, 이를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핵심 공약으로 소개하여 공론화시킨 이래로 재정혁신 사례로 인식되면서 중앙정부의 제도화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사례 수용 과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2004년 3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이후에 2013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 성남시와 울산광역시 남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도입되고 있음
 - 조례 제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의회에서의 거부감이 강하여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도 중요하고 의회의 이해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주민참여예산조례의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2005년 8월 지방재정법 개정), 법적 의무 규정을 신설(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조례의 확산 토대를 구축해 왔음
- 2005년 8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2005년 12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및 운영 절차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음
 - 2006년 6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민참여예산조례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였음

〈표 1〉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추진 경과 및 도입 현황

연도	주요 일지	조례 도입 현황	
		도입	누적
2002년	- 2002년 6월 민주노동당 지방선거 공약 제시	0	0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운영7월 「2004년도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권고	0	0
2004년	- 3월 광주광역시 북구 최초 참여예산조례 도입 - 6월 울산광역시 동구 도입	2	2
2005년	- 8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근거조항 신설 - 12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 위임	4	6
2006년	- 6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제시 - 11월 대전광역시 참여예산조례 도입	23	29
2007년		42	71
2008년		17	88
2009년		7	95
2010년	- 10월 행정안전부 3가지 유형 표준조례안 통보	10	105
2011년	-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참여예산제도 도입 의무 규정으로 전환	116	221
2012년		4	225
2013년		1	226

- 2010년 10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민참여예산의 제도화 수준이 다른 3가지 유형의 표준안을 제시하였으며,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의무화했음
 - 법 제정 이후에 조례 제정의 단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주민참여예산조례는 2013년 현재 226개 제정 · 운영

〈그림 1〉 주민참여예산조례 확산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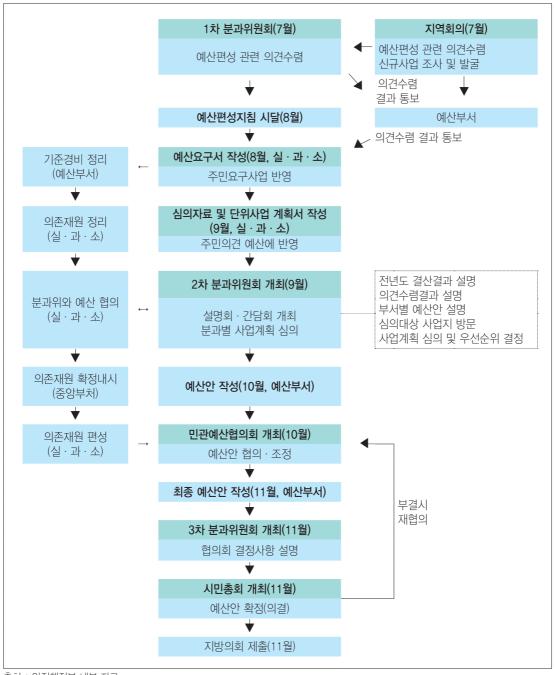
자료 : 장석준. (2014).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이형적 확산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주 : A 유형은 저수준, B 유형은 중수준, C 유형은 고수준의 참여임

4 주민참여예산제의 특징과 유형

- 지방재정 운영과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다양한 형태로 설계되어 유영되고 있음
- 참여하는 시민의 지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동적 지위와 능동적 지위로 나눌 수 있음
 - 수동적 지위는 결정권자가 집행부나 의회라는 것을 전제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결정과정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임
 - 능동적 지위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방하는 과정임
 -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결정 전에 주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위를 보장하자는 운동임
 -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체로 〈그림 2〉와 같은 절차가 가장 표준적인 절차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

〈그림 2〉 주민참여예산제의 표준적인 절차



출처 : 안전행정부 내부 자료

Ⅱ 외국의 주민참여예산 발전과정과 특징

- 1. 외국의 전개 과정
- 1989년에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도입된 이후 각국에 확산되기 시작함
- 지금은 세계 1.500개 도시에서 실시되고 있을 정도로 정책적 인기를 끌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아직 이에 관해 적극적인 관심이 부족하여 4개 도시(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세인트폴)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점차 확산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 일정한 표준화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국가 발전 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음

2. 외국 사례의 일반적인 특징

- 시 의원 주도의 참여 예산제
- 처음 출발했던 포르투 알레그레 지역에서는 시장의 주도로 이루어졌음
 - 멕시코시티와 같은 지역에서도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로 이루어졌음
 - 반면 필리핀이나 케냐 지역은 시민단체 중심으로 주창되고 있기도 함
-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확산되면서 지방의원 주도로 전개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적용되는 범위도 전체 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지역구(Ward) 단위에서 지방의원(Alderman)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이에 시청의 업무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음
 - 시 의원이 주도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임
 - 이는 예산 과정이 의회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함

■ 예산 투표

- 참여예산제라고 했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꼭 포함되는 요건 중의 하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반드시 전체 주민 대상의 투표(Vote)를 실시한다는 것임
 - 유권자의 5~15% 정도가 참여하고 있음
 - 뉴욕의 경우에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보다 예산 투표 참여율이 높다고 하여 의미를 분석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음
 - 선거 무관심이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차원에서 주민참여 확대의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임
 - 흥미로운 자료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빈곤층 비율보다 선거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이 빈곤이 아니라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주장이 참여예산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련이 있기도 함
- 특히 투표권이 근대 민주주의 혁명 과정에서 쟁취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소득층과 소외된 계층에게 예산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그림 3〉 미국 시카고에서 예산 투표를 하는 모습

출처: 시카고 주민참여 예산제 현장에서 필자가 수집한 자료임.

- 지역 간 연대와 네트워크 활동
- 독일에서는 25개 정도의 도시에서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음
 - 이에 지역 간 연대를 통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German PB Network라는 협력 체계를 통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음¹⁾
- 스웨덴의 특성 중 하나는 참여예산제 연합체를 형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임
 - 현재 스웨덴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는 20개의 카운티와 290개의 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는 100% 회원에 의해 재원이 충당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은 없음
 -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며, 이 연합체를 통해 참여예산제가 확대되고 있음²⁾

3. 외국 사례에서 본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의 특징

- 체계적인 시행
- 지역위원회, 전체 위원회 등 체계를 갖추고 실시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불특정 시민에 의해 투표를 하지만, 우리는 위원들이 임기를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는 분명한 절차와 형식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법적 근거의 마련
- 한국의 경우 매우 특징적인 것은 중앙정부에 의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의무적으로 도입되어 있다는 것임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기초로 전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확산되기 쉬운 측면도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있음

¹⁾ 관련되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www.service-eine-welt-de 그리고 www.buergerhaushalt.org

²⁾ 우리나라로 본다면 시도지사협의회와 같은 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협조적 삼각 연대(triangle)의 운영
- 외국의 경우 시 의원이 주도하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와는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고 있음
 - 심지어 이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도 있음
-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시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의 협조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이로 인해 운영에 관련되는 경비가 시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는 특징도 있음
- 외국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자원 봉사의 차원에서 진행되거나 의원의 정치적 활동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반대 세력이 참여예산 자체의 반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우려되고 있음
-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모임 운영
- 우리의 경우에는 예산 교육, 현장 점검, 성과 평가 대회 등의 모임을 통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음
- 외국의 경우에는 전체 시민을 염두에 두고 실시하고 있어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예산으로 배정된 다음에 현장에서 집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제도는 우리의 특징적인 장치임

〈표 2〉 한국과 외국 사례의 일반적 특징 비교

	한국	일반적인 외국 사례
법적 근거	법률 조례	법적 근거 없음
주도	시민단체 점차 지방정부로 전이	지역구 지방의원의 선거구 단위
주최	위원회	지역 주민 전체
의사결정	위원회 의결	주민 투표(voting)
네트워크	2014. 1. 25 전국 네트워크 결성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세계 네트워크

Ⅲ.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국 네트워크 형성

- 1. 예산감시 네트워크 운동의 경험
- 예산감시 네트워크
- 전국에서 예산감시운동을 펼치는 4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예산감시 네트워크'(간사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예산참여 운동을 실시한 경험이 있음
- 2003년 1월 예산감시 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은 서울에서 워크숍을 갖고 그해 주요 사업목표로 시민참여예산 조례제정 운동을 결의하였음
-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2003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³⁾ 선언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을 주창하는 운동도 실시한 경험이 있음
-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주민참여예산제
- 근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현행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출발했음
- 대표적인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인 예산행정에서 단체장과 의원들의 지대추구와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보완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체제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임
-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의회의 기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2.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노력
- 세계 네트워크 연계
- 지금 참여예산제는 전 세계적인 새로운 정책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들을 연계하는 활동도 전개되고 있음

^{3) 3}월 3일은 국세청이 조세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식을 치렀으나 1998년 시민단체들이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하면서 납세자의 날로 선포하고 납세자주권을 강조하자 국세청도 2000년부터 납세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다.

- 이러한 활동을 주도하는 OIDP에 한국 대표로 수원시가 등록을 추진(www.oidp.net)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는 노력도 필요함
- 아시아 국가의 참여예산제 확대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추진
- 권위주의 전통이 오래되고 자발적인 시민혁명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아시아 국가에서 참여 예산제는 아직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이 아시아의 확산을 위해 주도하는 노력도 필요함
 -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신흥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아시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참여예산 아시아 네트워크(Asian Network for Participatory Budget)'를 추진한다면 한국의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임
- 한국 참여예산제의 네트워크(network) 구축
- 아직 한국은 개별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개되고 있음
 - 이제 지역 간 연대를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합회를 구축하는 것임
 - 주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들의 연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주민참여예산제 지원단'을 설치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법임
- 3. 전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수원 선언
- 최초로 전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네트워크 결성
- 2014년 1월 24일 수원에서 있었던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국 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모임이 있었음

-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03년의 전국 예산감시 네트워크와는 다른 형태임
 - 자발적인 시민모임이 아니라 제도권 속에 들어와 있는 형태임
- 사후적인 감시 운동이 아니라 사전적인 참여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건전한 긴장 관계를 전제로 협력하는 체제가 필요함
- 이날 향후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10대 과제가 발표되었음
 - 1 위원회의 시민 대표성을 보장한다
 - 2.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 3.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등 사전 절차에 참여한다
 - 4. 집행부 예산안에 대한 검증 기능을 수행한다
 - 5.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 6.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한다
 - 7.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 참여를 강화한다
 - 8. 예산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 9. 예산 교육을 강화한다
 - 10. 참여하는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Ⅳ.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국 네트워크의 향후 정책방향

-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의 활성화
- 지역별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참여예산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전국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파라다임을 설계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참여 장치가 자칫 관료적 절차로 흐르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제 한국 주민참여예산제의 새로운 기능과 위상의 정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모바일(mobile)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 참여의 확대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장치가 매우 중요함
 - 유럽의 경우에 ICT를 이용한 주민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좋은 시사점임
 - 우리의 경우도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는 참여 예산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노력과 연계됨
- 젊은 층의 참여 확대 필요
- 미국의 경우 예산 투표 참여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면서 참여를 확산시키고 있음
- 유럽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
-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이것을 공채로 만회한다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몫이 되기 때문에 이들도 지금은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의사결정에 참여할 논리적 근거도 있음
- 우리의 경우 청소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예산운영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교육을 실천한다는 의미도 가지게 됨
 - 이럴 경우 학생들에 대한 제한적 공모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다양한 활동과 연계할 필요도 있음
 - 예컨대 YMCA. 적십자 활동반 등 다양한 고등학교의 모임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임
- 주민 참여의 동력으로 활용
-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참여예산제를 통해 이러한 활동을 연계하는 고리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함
- 예컨대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여성단체, 복지단체, 환경단체 등의 다른 지역운동(social movement)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이럴 경우 결국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과 연계될 것임
- 참여의 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 주민이 정부활동에 참여하는 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함
 - 하나는 주민의 직접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임
 - 다른 하나는 주민을 단위로 하는 대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임
- 현재는 주로 대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활성화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럴 경우 자칫 일반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아니라 또 다른 관료적 절차에 빠질 우려가 있음
 - -일반 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참고문헌

- 곽채기.(2003),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 NGO의 역할". 『법률행정논총』, 23(2).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23-158.
- 곽채기.(2005a),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모델과 사례분석" 『안산시주민 참여 예산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안산예산감시 네트워크.
- 곽채기.(2005b),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모형과 제도설계방안". 『한국지방재정논 집』, 제10권제1호, 247-276.
- 곽채기·박광우. (2005).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와 과제 시민토론회 자료집』. 광주광역시 북구·참여자치21.
- 나라정책자료실 엮음. (1992). 「정치개혁 시민운동론」. 서울: 백산서당
- 나중식.(2004),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한국행정논집』, 16(3). 한국정부학회, 457-482.
- 나중식.(200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브라질·미국·한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9권제2호. 한국지방정부학회. 133-158.
- 박광우.(200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박상필.(1999). 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 유형과 지원체제. 「한국행정학보」. 33(1); 261-278
- 송호근.(1998). 신사회운동 참여자 분석. 「한국사회과학」.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3)
- 신광영.(1999). 비정부조직과 국가정책.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원 8(1); 29-43
- 유재현. (1998). 시민운동과 커뮤니티. 「자치행정」. 제121호; 22-28

- 윤영진. (1998). '재정민주주의와 시민의 예산통제: 외국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신택교수 정년 기념논문집. 「한국의 재정과 재무행정」. 서울: 박영사; 92-115
- 이원희. (1999). 우리의 세금,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산감시시민운동의 방법과 대상. 1999년도 서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
- 이원희. (2003), "참여적 지방재정운영방향", 『한국지방재정논집』 8(2). 한국지방재정학회. 5-32.
- 임승빈. (1999). 「행정과 NGO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한겨레 21. (1999). 내 세금을 질질 흘리지 말라. 1999. 11.25; 19-26
- 함께하는 시민행동 엮음. (1999). 「세계의 시민단체」. 홍익미디어 CNC
- Barber, B. (1984).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eckman, B.(1993). The Liberation of Civil Society: Neo-Liberal Ideology and Political Theory. Review of Political Economy, no. 58; 20-33
- Etzioni, A.(1996). The Community of Communities. The Washington Quarterly. 19(3); 127-148
- Field, A. Belden. (1988). In Defense of Political Economy and System Analysis: A Critique of Prevailing Theoretical Approach to the New Social Movement C. Nelson and L. Grossberg 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MacMillan Education. 김영순 역. (1991). 신사회운동론의 여러 경향과 비판. 「사회와 사상」. 26; 103—129
- Giddens, A.(1998). The Third Way. 한상진. 박찬욱 옮김. 「제3의 길」. 서울: 생각의 나무 Smith, G.E and Carole A. Huntsmasn. (1997). Reframing the Metaphor of the Citizen-Government Relationship: A Value-Centered Perspective. Public
 - Administration Review. 57(4); 309-318
- Slater, D.(1991). New social Movements and Old Political Questions: Rethinking

State-society Relations in Latin American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al Econmy. 신상숙 역. 제3세계의 신사회운동. 「사회와 사상」. 26; 155-187 Wilde, L.(1990). Class Analysis and the Politics of New Social Movement. Capital and Class. no. 42. 구갑우 역. (1991). 신사회운동과 계급정치. 「사회와 사상」. 26; 130-154.

최근 간행물

2013

통권 469	지방 3.0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와 전략 연구
통권 470	정부간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
통권 471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방안
통권 472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적자원 활용 방안
통권 47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강화 방안
통권 474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정부의 역할
통권 475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통권 476	읍면동의 근린자치기능 강화방안
통권 477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방안
통권 478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형 주민안전망 구축방안
통권 479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재해 주민안전망 구축 방안
통권 480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4대악) 역할 및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통권 481	지방재정관리체계 개선방안—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제도 중심으로—
통권 482	지방세 비과세 ·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통권 483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통권 484	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기능 강화방안
통권 485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 차등보조율을 중심으로
통권 486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개선방안
통권 487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통권 488	지방분권형 특화산업 육성방안
통권 48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불균형 해소방안
통권 490	생활안전형 보행환경정책 개선방안
통권 491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육성방안

통권 458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시스템의 다양화 방안
통권 459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의 구성과 활용 방안
통권 460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통권 461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
통권 46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통권 463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부담 조정방안
통권 464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안
통권 465	고령화 · 저성장시대의 지역발전 투자전략
통권 466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안
통권 467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연구총서 (통권 468)	새로운 지방예산제도

통권 451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
통권 452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다원화 전략
통권 453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 강화 전략
통권 454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통권 455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
통권 456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전략
연구총서 (통권 457)	지방세제의 선진화 -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